

◎ 환경처고시 제1992-48호

대기오염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 및 검사방법 고시(환경처고시 제88-8호 '88. 2. 27.)중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1992년 8월 14일

환경처장관

대기오염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 및 검사방법 고시중 개정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4.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오염 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과 성능검사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2호중 “환경처장관”을 “각각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5조 제1항중 “분진”을 “먼지”로 하고, “제15조 별표 6”를 “별표 7”로 한다.

제6조 제1항중 “환경오염공정시험법”을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으로 각각 하고, “한국공업규격 또는 환경처장관이 인정하는 분석방법”을 “한국공업규격분석방법”으로 한다.

제7조중 “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검사를 받고자 하는 방지시설업자(이하 “검사신청자”라 한다)”는 “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검사를 받고자 하는자(이하 “검사신청자”라 한다)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로 하고,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첨가제의 화학적 조성에 대한 성분분석내용 및 설명서

제9조 제2항중 “환경처장관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을 “검사기관의 장은”으로 하고, 환경처 관계공무원을 “관계공무원”으로 하며, 제3항중 “그 결과를 작성(별지 제2호서식)하여 검사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를 “5일 이내에 검사결과서(별지 제2호서식)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검사신청자의 업소를 관할하는 지방환경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조중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립환경연구원
2.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3. 한국생산기술연구원
4. 기타 환경처장관이 인정하는 검사기관

제11조 제1항중 “환경처장관”을 “신청자의 업소를 관할하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제2항 및 제4항중 “환경처장관”을 “지방환경청장”으로 각각 한다.

제12조중 “검사신청자 또는 그 승계자만이”를 “검사신청자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만이”로 한다.

제13조중 “환경처장관”을 “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조제 제1호중 “받을 때”를 “받은 경우”로 하며, 제2호중 “않은때”를 “않은 경우”로 하고, 동조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방지시설업등록이 취소된 경우
4.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이 고시의 명령에 위반한 경우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 (처리결과 통보) 지방환경청장은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을 인정하였거나, 인정한 내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도·점검기관(시·도)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 부터 시행합니다.
- ② (기인정 받은 대기오염방지시설 “연소보조장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이전에 환경처장관으로 부터 대기오염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로 인정을 받은 시설은 이 고시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로 인정받은 것으로 봅니다.

◎ 환경처공고 제1992-25호

대기환경 보전법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법령안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2년 8월 17일

환경처장관

1. 개정이유

병원·발전소 등 국민편익시설의 법령위반시에는 실질적으로 조업정지를 명하기 어려우므로 조업정지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하며, 운행차 수시점검시 기준초과자에 대한 처벌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배출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부

과금에 대하여 가산금을 징수토록 하고 체납된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가산금을 가산토록 함(안 제19조의 2 및 3)

나. 운행차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배출가스 보증기간에 자동차제작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정상적인 성능을 발휘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자동차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자동차제작사가 무상으로 결함을 시정하도록 함(안 제34조 제5항 및 제6항).

다. 운행차에 대한 배출가스보증기간 및 이에 따른 결함시정제도의 대상이 '93년부터 경유사용자동차까지 확대되게 됨에 따라 배출가스허용기준초과 경유사용자동차에 대하여 차종전체를 대상으로 개선을 명령하는 현행제도의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를 삭제 조정함(안 제38조 제2항)

라.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함으로 인해 국민생활 또는 공익에 큰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51조의 2).

마. 무허가시설을 설치한자외에 이를 운영한자에 대하여도 벌칙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55조 제1호).

바.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한 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의 형사처벌에서 과태료 처분으로 전환함(안 제57조 제6호 및 제59조 제1항 제8호).

사.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59조 제1항 제6호의 2).

대기환경보전법중 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 2(권리의무의 승계)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양도·양수의 경우, 양수인은 변경신고 이행여부에 관계없이 배출시설 설치자로서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제15조 규정에 의한 정상운영 의무를 진다.

제14조 제1항중 “신고하고 지정한 기일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를 “신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제3항(중전 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로 한다.

② 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한 기일내에

허가사항과의 부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제3항중 “기기의 부착 등” 앞에 “굴뚝자동측정기의 설치를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을 삽입하고, 동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제5항(중전 제4항)중 “신고하여야 한다”를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중에 사업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굴뚝자동측정기 설치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환경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기의 성능검사 등을 받아야 한다.

제19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배출부과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국제징수법의 예에 의한다.

제19조의 2 및 제19조의 3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19조의 2(가산금) 배출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배출부과금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의 3(중가산금)① 체납된 배출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배출부과금의 100분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9조의 2의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의 합계액은 체납된 배출부과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체납된 배출부과금이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9조 2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0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 제21조 제1항중 “설치한 자에”를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에”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악취발생물질의 소각금지) 고무·피혁·합성수지 또는 폐유 등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은 총리령이 정하는 지역이외에서 소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지역안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제32조 제4항중 “인증의 신청·인증의 방법”을 “인증

의 신청, 인증의 시험, 시험수수료, 인증의 방법”으로 한다.

제34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배출가스보증기간내에 있는 자동차의 운행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자동차제작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정상적인 성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결함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시정요구를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지체없이 결함부분에 대한 시정을 하여야 한다.

제38조 제1항후단 및 동조 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49조 제1항 중 “관계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를 “제8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동항 각호에 4의 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는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 2.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신고한 자

② 환경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한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오염도 검사기관에게 분석·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를 현장에서 판정 가능한 오염물질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 2(과징금부과 등)① 환경처장관은 사업자가 제17조 또는 제20조 규정에 해당되어 조업정지명령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에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 조업정지에 갈음하여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부과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양은 당해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당시의 오염물질의 종류와 양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환경처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52조 제7호 및 제53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55조 제1호 중 “변경한 자”를 “변경하거나 이러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로 하고, 동조 제2호 중 “검사결과”를 “확인결과”로 한다.

제57조 제6호 및 제58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59조 제1항에 제6의 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동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의2.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자동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부 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제4항, 제38조 제1항 및 제59조 제1항 제8호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②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의 2(권리의무의 승계) 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양도·양수의 경우, 양수인은 변경신고 이행여부에 관계없이 배출시설 설치자로서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제15조 규정에 의한 청상운영의무를 진다.	
제14조(배출시설 등 설치완료의 신고)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완료한 때에는 그날 부터 15일 이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에게 신고하고 지정한 기일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4조(배출시설설치완료신고)①
(신	설)	② 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한 기일내에 허가사항과의 부합여		

현행	개정안
등 필요한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 명령을 받은자는 환경처장관이 지정하는 자로부터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선 결과를 확인받은 후 환경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9조(보고 및 검사 등)①
제49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처장관은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의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4. (생략) <신 설>	1.~4. (현행과 같음) 4의 2.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신고한 자
5.~11. (생략) <신 설>	5.~11. (현행과 같음) ② 환경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배출허용기준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한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오염도 검사기관에게 분석·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를 현장에서 판정가능한 오염물질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신 설>	③ (현행과 같음) 제51조의 2(과징금부과 등) ① 환경처장관은 사업자가 제17조 또는 제20조 규정에 해당되어 조업정지명령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에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 조업정지에 갈음하여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양은 당해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당시의 오염물질의 종류와 양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중별과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환경처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제52(청문) 환경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와 대기환경보전법에 큰 유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청문)
1.~6. (생략) 7.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조치명령 8.~12. (생략) 제53조(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6. (생략) <삭 제> 8.~12. (현행과 같음) 제53조(수수료)
1. (생략)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검사 3.~4. (생략) 제5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현행과 같음) <삭 제> 3.~4. (현행과 같음) 제55조(벌칙)
1.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 2.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 3.~9. (생략) 제5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변경하거나 이러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2. 확인결과
1.~5 (생략) 6.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7.~9. (생략) 제5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9. (현행과 같음) 제57조(벌칙)
1.~3. (생략) 4.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8. (생략) 제59조(과태료)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5. (현행과 같음) <삭 제> 7.~9. (현행과 같음) 제58조(벌칙)
1.~6. (생략) <신 설>	1.~3. (현행과 같음) <삭 제> 5.~8. (현행과 같음) 제59조(과태료)①
8. 제38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개선 명령을	1.~6. (현행과 같음) 6의 2.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자동차 배출

현행	개정안
제20조(허가의 취소 등)① 환경처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조업을 정지시키거나 그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에서 "증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가산금에 가산하여 정수한다. 이 경우 증가산금의 합계액은 제납된 배출부과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
1.~2.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제납된 배출부과금이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u>(신설)</u>	③ 제19조의 2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 (생략)	제20조(허가의 취소 등)①
제21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 조치 등)① 환경처장관은 제1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0조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의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하여 당해 배출시설의 사용금지 또는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제21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 조치 등)①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49조(보고 및 검사 등)① 환경처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의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49조(보고 및 검사 등) ①
<u>(신설)</u>	제8조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시설·장비
	제52조의 2(과징금 부과 등)① 환경처장관은 사업자가 제17조 또는 제20조의 규정에 해당되어 조업정지명령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에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 조업정지에 갈음하여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양은 당해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당시의 오염물질의 종류와 양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중벌과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현행	개정안
제54조(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1. (생략)	제54조(수수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검사
3.~5. (생략)	1. (현행과 같음)
제5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삭제)
1. 제1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	3.~5. (현행과 같음)
2.~7. (생략)	제56조(벌칙)
제5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 (생략)	1.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이러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4.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7. (현행과 같음)
5.~6. (생략)	제59조(벌칙)
<u>(신설)</u>	1.~3. (현행과 같음)
	4. (삭제)
	5.~6. (현행과 같음)
	7. 과실로 인하여 제29조 제1항제 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버린 자

◎ 환경처공고 제1992-27호

소음·진동규제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법령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2년 8월 18일

환경처장관

1. 개정이유

법령의 위반으로 조업정지처분을 받게된 시설중 조업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에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의 시설에 대하여는 조업정지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하며, 아울러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양도·양수 및 임대차의

경우, 양수인은 변경신고 이행여부에 관계없이 배출 시설 설치자로서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임차인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운영의무를 지도록 함(안 제9조의 2).

나. 법령위반으로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등 행정 처분을 함으로 인하여 국민생활 또는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의 시설에 대하여는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의 2).

다. 환경처장관은 배출시설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에 대하여 당해배출시설의 사용금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제1항).

소음·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안

소음·진동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호 중 “공업배치법”을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 2(권리·의무의 승계) 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양도·양수의 경우, 양수인은 변경신고 이행여부에 관계없이 배출시설 설치자로서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운영 의무를 진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설치완료의 신고)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완료한 때에는 그날부터 15일 이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한 기일내에 허가사항과 부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후가 아니면 그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 제19조 제1항 중 “설치한 자”를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로 한다.

제5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 2(과징금 부과 등) ① 환경처장관은 사업자가 제16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해당되어 조업정지명

령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에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 조업정지에 갈음하여 50만원이상 5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간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55조 중 제2호를 삭제한다.

제58조 제1호중 “변경한 자”를 “변경하거나 이러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로 하고 동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

부 칙

①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한다.

②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6. (생략)	제2조(정의) 1.~6. (현행과 같음)	○공업배치법 및 공업단지관리법이 통합 개편됨.
7. “공장”이라 함은 공업배치법 제2조 제1호의 공장을 말한다. 다만,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공항시설내의 항공기 정비공장을 제외한다. 8.~9. (생략)	7.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8.~9.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의 2(권리·의무의 승계) 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양도·양수의 경우, 양수인은 변경신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양도·양수의 경우 양수인이 배출시설 설치자로서의 권리·의무를 승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이행여부에 관계없이 배출시설 설치자로서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 운영의무를 진다.	계토록 함.
제13조(설치완료의 신고)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청장관에게 신고하고 지정된 기일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후가 아니면 그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설치완료의 신고)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완료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청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환경청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기일내에 허가사항과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후가 아니면 그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설치완료 신고후 소음도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적합여부를 판정하였으나 허가 사항과의 부합여부만을 확인후 배출시설을 정상가동토록 함.
제18조(허가의 취소 등) 환경청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조업을 정지시키거나 그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정상운영하지 아니한 때 (<u>신설</u>)	제18조(허가의 취소 등) 1. 2.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때에는 허가를 취소토록함으로써 정당하게 배출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함. ○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도 당해 배출시설의 사용금지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함.
제19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① 환경청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하여는 당	제19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① ----- ----- -----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해 배출시설의 사용금지 또는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② (생략) (<u>신설</u>)	② (현행과 같음) 제53조의 2(과징금 부과 등)① 환경청장관은 사업자가 제16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해당되어 조업정지명령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에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 조업정지에 갈음하여 50만원 이상 5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청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인하여 국민생활 또는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비료공장, 방위산업 등)에 대하여는 조업정지를 대신하여 과징금을 부과토록 함.
제55조(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검사 3. ~4. (생략) 제5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	제55조(수수료) 1. (현행과 같음) (삭 제) 3. ~4. (현행과 같음) 제58조(벌칙) 1. 변경하거나 이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 변경하거나 이리	○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 뿐만 아니라 이를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한 자.	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이용하여 조업하는 자도 처벌토록 함.
2.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합관정을 받지 아니하고 조업을 한 자	2.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적합관정을 받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	○문구조정
3. ~9. (생략)	3. ~9. (현행과 같음)	

◎ 대통령령 제13,715호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의 지정)환경처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의 영향권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기오염의 영향권별 및 수질오염의 수계별로 각각 영향권별환경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지역은 중권역 및 대권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의2 내지 제6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영향권별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의 수립)

① 지방환경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권역의 관리지역이 지정된 때에는 지방환경청장이 관할하는 중권역의 특성에 맞는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이하 "중권역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중권역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② 환경처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권역의 관리지역이 지정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요청된 중권역관리계획을 기초로 하여 대권역의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이하 "대권역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대권역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③ 지방환경청장 또는 환경처장관은 중권역관리계획 또는 대권역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중권역환경관리위원회 또는 대권역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조정 전에 각각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방환경청장 또는 환경처장관은 중권역관리계획 또는 대권역관리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필요한 조치 또는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6조의3(중권역관리계획등에 대한 수정계획의 수립 등)① 지방환경청장 또는 환경처장관은 제6조의2제1

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중권역관리계획 또는 대권역관리계획을 시행함에 있어서 중대한 경제적·사회적여건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참작하여 수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계획의 수립·확정 및 통보등에 관하여는 제6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의4(환경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안의 관리계획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방환경청에 중권역환경관리위원회(이하 "중권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권역위원회 및 대권역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중권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환경청장이, 대권역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처차관이 된다.

③ 중권역위원회의 위원은 지방환경청장이, 대권역위원회의 위원은 환경처장관이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2. 지방의회의원
 3. 수자원관계기관의 임·직원
 4. 상공단체등 관계경제·사회단체의 대표자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6조의5(환경관리위원회의 기능등) ① 중권역위원회 및 대권역위원회는 관리지역안의 환경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환경보전대책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2.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산업체간 환경보전대책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주민 및 산업체간의 이해조정 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원의 배출허용기준 조정 및 총량규제에 관한 사항
5. 기타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의 수립에 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중권역위원회 및 대권역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처장관이 정한다.

제11조 제1항 중 "그 결과(이하 "협의내용"이라 한다)를"을 "그 결과(이하 "협의내용"이라 한다)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경영향평가가서 접수된 날부터 60일(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을 삽입하지 아니한다)이내에"로 한다.

제12조 제2항 제1호 중 "사업계획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사업계획면적의 100분의 30이상"으로 하고, 동항 제2호 중 "당초사업계획의 100분의 30이상"으로 한

다.

제14조 제1항 중 “그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를 “그 이행을 촉구하고, 그 내용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5조 제2항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지방환경영향평가위원회) ①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기술적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환경청장 소속하에 지방환경영향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방환경영향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분야별 위원 각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와 관계 공무원중에서 지방환경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제18조 및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은 지방환경영향평가위원회에 이를 준용하며, 기타 지방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사항은 지방환경청장이 정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권한의 위임)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1. 별표 3에 규정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관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나. 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조정 및 보완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다. 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자료등의 제출요청

라.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내용 이행여부의 조사·확인

마. 법 제28조 제2항 및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필요한 조치의 요청

바. 제8조 제2항 제1호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초안의 수리 및 의견 통보

사.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및 공람을 생략하는 경우의 통보의 수리

아.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 검토결과 사업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자.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계획서의 수리

차.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의 수리

카.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재협의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한 협의

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착공등의 신고의 수리

파.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대한 이행의 촉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하.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필요한 조치의 요청

2. 별표 3에 규정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외의 대상사업에 관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내용 이행여부의 조사·확인

나. 법 제28조 제2항 및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필요한 조치의 요청

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착공등의 신고의 수리

라.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대한 이행의 촉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별표 1] 의 1. 대기의 항목란중 “부유분진”을 “먼지”로 한다.

[별표 2] 의 가. 도시의 개발란의 대상범위란중 3)란의 협의 요청시기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전

[별표 2] 의 가. 도시의 개발란의 대상범위란의 9)란중 “그 결정에 있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다음사업”을 “다음사업”으로 한다.

[별표 2] 의 나.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조성란중 6)란의 경유기관란중 “상공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한다.

2) 항만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항만에서의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 중 의곽시설·철도·운하의 건설 및 공유수면 3헥타르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항만시설의 조성 또는 설치	○관리청이 항만공사의 시행자인 경우에는 항만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수립완료전, 비관리청이 항만공사의 시행자인 경우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공사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전	항만관리청
3) 항만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역항에서의 항만준설 사업중 새로운 준설	○관리청이 항만공사의 시행자인 경우에는 항만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수립완료전, 비관리청이 항만공사의 시행자인 경우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공사시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전	항만관리청

[별표 2] 의 다. 에너지개발란의 2)란중 “핵트일”을 “핵타르”로 한다.

[별표 2] 의 라. 항만건설란중 2)란 및 3)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p.70표 참조).

[별표 2] 의 차. 매립 및 개간사업란의 대상범위란의 1)란 및 2)란중 “핵트일”을 각각 “핵타르”로 하고, 동사업란의 대상범위란중 1)란의 협의요청시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인가신청전.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 기관이 매립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9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 실시계획의 인가신청전

[별표 3] 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3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중 다음 표의 왼쪽란의 구분에 의한 사업에 대한 오른쪽란의 조치는 제3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환경처장관이 이를 행한다.

구 분	조 치
평가서조안이 제출되어 내용에 관한 검토가 진행중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통보
환경영향평가가 제출되어 내용에 관한 검토가 진행중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의 통보, 이행계획서의 수리 및 제12조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수리
제협의요청에 의하여 내용에 관한 검토가 진행중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제협의

[별표 3]

지방환경청장관할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제33조 관련)

1. 별표 2에 규정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중 사업자가 중앙 행정기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인 사업
2. 별표 2에 규정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경유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인 사업
3. 별표 2의 다. 에너지개발란의 3)전원개발에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중 나. 및 다.의 규정에 의한 사업

◇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개정이유

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의 체계적인 지정·관리를 통하여 환경의 영향권별관리를 강화하고, 환경처장관의 환경영향평가업무중 일부를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하여 환경영향평가업무를 신속히 검토·처리하게 함으로써 행정능력을 향상시키고, 아울러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환경처장관은 환경의 영향권별관리를 위하여 대기오염의 영향권별 및 수질오염의 수계별로 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을 중권역 및 대권역으로 각각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령 제6조).
- 나. 중권역환경관리계획은 지방환경청장이 수립하여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대권역환경관리계획은 중권역환경관리계획을 기초로 하여 환경처장관이 수립하도록 함(령 제6조의2).
- 다. 지방환경청장 및 환경처장관은 수립된 영향권별 관리계획을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은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협조를 하도록 함 (령 제6조의2).
- 라. 중권역환경관리계획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방환경청에 중권역환경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령 제6조의4 및 령 제6조의5).
- 마.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은 환경영향평가서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자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등에게 통보하도록 함 (령 제11조).
- 바.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에 대한 재협의대상을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토지면적이 당초 사업계획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이 증가되는 경우로 하던 것을 당초 사업계획면적의 100분의 30이상 증가되는 경우로 하는등 재협의대상을 완화함(령 제12조).
- 사.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환경처장관의 권한의 일부가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기술적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환경청장소속 하에 지방환경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함(령 제24조의2).
- 아. 환경처장관의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업무중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협의업무등을 지방환경청장에게 추가위임함(령 제33조).
- 자.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중 일부사업에 대하여 평가대상 사업의 범위, 협의요청시기 및 경유기관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령 별표2) (법제처 제공)